## 은행이체 서비스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한양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은행과의 입출금자동이체서비스(이하 "은행이체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은행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 2. "타행"이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은행을 말한다.
- 3. "입금이체"라 함은 제휴은행 또는 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텔레뱅킹과 자동화 기기를 통하여 고객의 증권계좌에 연계되어진 제휴은행 계좌번호로 자금을 입 금하는 것을 말한다.
- 4. "출금이체"라 함은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계좌로부터 은행이체서비 스 상의 제휴은행 또는 타행의 고객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종합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고객은 회사가 승낙한 시점부터 은행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동일인의 요건)** 신청서상 회사의 고객계좌 명의인과 은행계좌의 명의인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제5조(출금이체 접수시의 본인확인) ① 고객의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출금이체 신청시 본인확인은 계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로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출금이체 거래시 이용자 ID, 접속용비밀번호, 전자서명비밀번호(공인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고객 본인으로 본다.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출금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유지한다.

제6조(출금이체의 처리)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출금이체 신청 접수시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전표 없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실명확인번호를 확인한 후 이체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입금이체의 처리) ① 입금 이체시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한다.

② 자기앞수표로 입금이체 한 경우 동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추심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은 회사의 고객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다.

제8조(출금이체의 한도) 1일 최대 출금이체한도는 <별첨>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제9조(수수료)** 은행이체서비스 이용 시 <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10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고객은 이용계좌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직접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접수창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1. 접수창구 : 본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11) 또는 영업점(홈페이지 참조)
- 2. 대표전화 : (02)3770-5000

제11조(기재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고객이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은행이 체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

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철회 신청) 고객이 은행이체서비스의 거래지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하여야한다.

**제14조(기타)**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1. 제8조의 "<별점>에서 정하는" 1일 최대 출금이체 한도는 다음과 같다.
-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부가서비스안내
-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은행이체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부가서비스 수수료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